



아이에스시스템(주) · 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

## 업무협약서

아이에스시스템(주)(이하 “아이에스시스템”이라 한다)과 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(A/S)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 간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사후관리(A/S)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우수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려 수요 촉진은 물론 공동으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범위)** 업무협약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 간의 단체표준인증제품 사후관리(A/S)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
- ②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 간의 단체표준규격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③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 간의 사후관리(A/S) 수수료에 관한 사항
- ④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 간의 사후관리(A/S)에 관한 교육 사항

**제3조(사후관리업무 협약)** ① 아이에스시스템은 조합에서 타사의 단체표준인증제품 사후관리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에서 타사의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요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.

③ 조합은 아이에스시스템이 타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시 사후관리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 등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단체표준인증업체가 도산 등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A/D보드를 공급한 인증업체가 우선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사후관리 정보의 제공)** 조합과 아이에스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.

**제5조(품질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)** ① 아이에스시스템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.  
② 조합이 단체표준인증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아이에스시스템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**제6조(적용규정)**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7조(효력 및 종료)**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약정내용의 변경 또는 폐기를 상호합의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아이에스시스템과 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07월 26일

아이에스시스템(주)

대표이사 이 한 영

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

이 사 장

구 기 도

7/12